

## 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 운영규정

제정	2013. 3. 12.	규정 제 23호
일부개정	2013. 6. 26.	규정 제23-1호
일부개정	2013. 11. 12.	규정 제23-2호
일부개정	2014. 2. 27.	규정 제23-3호
일부개정	2015. 9. 3.	규정 제23-4호
일부개정	2016. 12. 13.	규정 제23-5호
일부개정	2018. 3. 20.	규정 제23-6호
일부개정	2018. 12. 20.	규정 제23-7호
일부개정	2019. 6. 26.	규정 제23-8호
일부개정	2019. 11. 18.	규정 제23-9호
일부개정	2020. 6. 18.	규정 제23-10호
일부개정	2021. 2. 19.	규정 제23-11호
일부개정	2023. 12. 14.	규정 제23-12호
일부개정	2025. 5. 23.	규정 제23-13호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3. 20.>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건의료기관”이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를 말한다.
2. “보건의료기관개설자”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자,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를 운영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3. “보건의료인단체 및 보건의료기관단체”란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인 단체 및 의료기관 단체를 말한다.

### 제2장 보상재원 <개정 2023. 12. 14.>

**제3조(보상재원 적립목표액)**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매 사업연도마다 보상에 필요한 비용(이하 “보상재원”이라 한다)의 연도별 적립목표액을 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적립목표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23. 12. 14.>

[제목개정 2023. 12. 14.]

**제4조(보상재원의 부담 주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 <개정 2018. 3. 20.> <개정 2023. 12. 14.>

**제5조** [본조삭제 2023. 12. 14.]

**제6조** [본조삭제 2023. 12. 14.]

**제7조(자료제공 요청)** 원장은 보건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에 대하여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12. 14.]

**제8조** [본조삭제 2023. 12. 14.]

**제9조** [본조삭제 2023. 12. 14.]

**제10조** [본조삭제 2023. 12. 14.]

**제10조의2** [본조삭제 2023. 12. 14.]

**제10조의3(결손처분)**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게 부과된 분담금을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분담금 납부의무자의 사망, 법인격 상실 또는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분담금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
2.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그 밖에 분담금 징수에 소요되는 비용이 과다한 경우 등 분담금을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사회에서 결손처분을 의결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분담금의 결손처분을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2. 14.]

**제11조** [본조삭제 2019. 6. 26.]

**제12조(분담액 확인 요청)**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분담금액 산출내역에 대한 열람을 요청한 경우 원장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운용)**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4항에 따라 원장은 보상재원을 일반 예산과는 독립된 계정으로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14.>

### 제3장 보상심의위원회

**제14조(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의 피해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의료중재원에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5조(보상심의위원회의 기능)** 보상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보상금 지급요건에 관한 사항
2. 보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
3. 보상금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
4. 보상금 환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상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제16조(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 9. 3.> <개정 2025. 5. 23.>

②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비상임으로 한다. <개정 2025. 5. 23.>

1.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의료 정책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2. 원장의 제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산부인과 전문의 3명  
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2명  
다. 조정위원회의 조정위원 중 2명  
라. 감정단의 감정위원 중 2명  
마.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③ 제2항제2호가목, 나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심의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15. 9. 3.> <개정 2025. 5. 23.>

④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20.>

**제17조(위원장)** ①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보상심의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8. 3. 20.>

② 심의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심의위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25. 5. 23.>

③ 심의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심의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대행자를 지명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심의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 2. 19.>

**제18조(간사)** ① 보상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복지부에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18. 3. 20.> <개정 2019. 11. 18.> <개정 2025. 5. 23.>

② 간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상심의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관리
2. 보상심의위원회의 소집 및 심의·의결 결과 처리
3. 심의위원의 명부 작성 및 관리
4. 그 밖에 보상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8. 3. 20.>

③ 의료중재원에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

는 부서의 장은 간사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그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5. 23.>

**제19조(보상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보상심의위원회 회의는 심의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 심의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보상심의위원회는 재적 심의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심의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보안유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3. 20.>

④ 보상심의위원회 회의는 심의위원이 출석하는 대면회의(영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심의위원장이 서면으로 심의할 것을 결정할 수 있으며, 서면을 통한 심의는 재적 심의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 2. 19.>

⑤ 간사는 회의내용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명단, 회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을 기재하여 출석 심의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3. 20.>

**제20조(심의위원의 해임 및 해촉)** 원장은 심의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3.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개정 2018. 3. 20.>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의료중재원에 손실을 발생하게 한 때
5. 심의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6.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6조제1항의 의무 및 제한·금지 행위를 위반한 사실이 있을 때 <신설 2023. 12. 14.>
7.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개정 2023. 12. 14.>

**제21조(제척, 기피, 회피 등)** ① 심의위원은 영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1. 2. 19.>

② 청구인은 심의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기피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기피신청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상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19.>

③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심의위원은 그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보상심의위원회에 소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피신청에 관한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못한다. <개정 2021. 2. 19.>

④ 심의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21. 2. 19.>

**제22조(공정한 직무수행)** 심의위원장, 심의위원 등은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4장 보상의 청구

**제23조(보상의 범위)**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불가항력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사업(이하 “의료사고 보상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고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8. 3. 20.>

1. 분만 과정에서 생긴 신생아의 뇌성마비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한 신생아의 뇌성마비 <개정 2015. 9. 3.>
2. 분만 과정에서의 산모의 사망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한 산모의 사망 <개정 2015. 9. 3.>
3. 분만 과정에서의 태아의 사망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

상 징후로 인한 신생아의 사망 <신설 2015. 9. 3.>

**제24조(보상 청구의 고지)**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하 “조정위원장”이라 한다)은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의료분쟁의 조정 또는 중재 절차의 진행 중 해당 의료사고에서 보건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감정서가 제출되고, 해당 의료사고가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조정 또는 중재 절차의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의료사고의 피해자 측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만 해당한다.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에게 그 사실과 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5. 9. 3.>

**제25조(청구인의 자격)** ① 제24조에 따른 청구인은 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청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당사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2. 변호사

**제26조(청구시기)** 조정위원장으로부터 제24조에 따른 고지를 받은 청구인은 고지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을 청

구할 수 있다.

**제27조(청구방법)** ① 청구인은 보상 청구를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청구서(이하 “보상 청구서”라 한다)를 보상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6.26>

② 제25조제2항에 따른 대리인이 보상 청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1항에서 규정한 보상청구서와 함께 보상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6.26.>

**제28조(전자문서 등에 의한 보상 청구)** ① 청구인은 제27조의 방법 외에 전자문서 등으로 보상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된 보상 청구서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심의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보상을 청구한 청구인에게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0.>

**제29조(사건기록의 이관)** ① 심의위원장은 제27조, 제28조에 따라 보상 청구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조정위원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3.6.26.> <개정 2018. 3. 20.>

② 조정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조정 또는 중

제 절차를 중단하고, 해당 사건의 기록 일체를 보상심의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13.6.26>

**제30조(청구번호)** ① 보상 청구의 번호는 서기 연수의 네자리 아라비아 숫자, 사고유형, 접수번호인 아라비아 숫자로 구성한다.

② 사고유형은 태아 사망의 경우 “의보태”, 신생아 사망의 경우 “의보신”, 산모 사망의 경우 “의보산”, 신생아 뇌성마비의 경우 “의보뇌”로 표시한다. <개정 2015. 9. 3.>

③ 접수번호는 해당 연도 접수 순서에 따라 부여한다. <개정 2018. 3. 20.>

**제31조(보상 청구서 보완 등)** ① 심의위원장은 청구인이 제출한 보상 청구서 및 구비서류의 흠으로 인하여 보상 청구의 심사·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이를 보완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10일의 기간을 정하여 요청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시 7일의 기간을 정하여 제출을 독촉하여야 한다.

**제32조(각하 등)** ① 심의위원장은 보상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하한다. <개정 2013.6.26>

1. 보상 청구의 대상이 법 부칙 제1조에 정한 법 시행 시기 이전에

종료된 의료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사고에 해당하는 경우

2. 보상 청구서 제출 후 해당 보상 청구의 대상에 대하여 법원에 소가 제기된 경우

3. 제26조에 정한 청구기한이 지난 후에 보상 청구를 하는 경우

4. 청구인이 보상 청구 후에 청구 대상 의료사고를 이유로 의료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또는 형법 제314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5.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 받은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개정 2018. 3. 20.>

6. 청구인의 소재불명, 연락두절 등 그 밖에 보상심의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개정 2018. 3. 20.>

② 심의위원장은 보상청구를 각하한 경우 조정위원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사건의 기록 일체를 조정위원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3.6.26.> <개정 2018. 3. 20.>

③ 심의위원장은 보상 청구를 각하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청구 각하통지서에 따라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6호에 정한 청구인의 소재불명, 연락두절을 사유로 각하하는 경우에 그 청구인에게는 통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6.26.> <개정 2018. 3. 20.>

④ 청구인은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별지 제6호서식” 불가항력 보상 청구 취하서를 제출하여 보상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장은 조정위원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해당 사건의 기록 일체를 지체 없이 조정위원장에게 보내야 한다. <신설 2013.6.26.>

## 제5장 보상의 심사

**제33조(보상 청구의 심사)** 보상심의위원회는 제23조에 따른 뇌성마비, 신생아 사망, 태아 사망, 산모 사망에 대하여 분만 행위와의 관련성, 보상금 지급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판정한다. <개정 2015. 9. 3.>

**제34조(심사 처리기간)** ① 보상심의위원회는 제27조, 제28조에 따라 보상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상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뇌성마비에 대한 보상 청구의 심사 처리기간은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0.>

③ 제1항에 따라 심사 처리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처리기간의 연장 사유와 처리 예정 기한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심의위원장이 청구인에게 자료의 수정이나 보완을 요청하거나, 청구인이 자료의 보완 등을 이유로 심사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 심의위원장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5조(심사 처리기간 불산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심사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수정이나 보완에 필요한 기간(보완 또는 보정을 위하여 관계서류를 청구인에게 발송한 날과 보완 또는 보정되어 보상심의위원회에 도달한 날을 포함한다) <개정 2018. 3. 20.>
2. 제39조에 따라 재감정 또는 추가감정이 필요한 경우 재감정 등에 걸리는 기간 <개정 2018. 3. 20.>
3. 접수, 경유 및 처리하는 기관이 각각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경우 청구서 등의 이송에 걸리는 기간 <개정 2018. 3. 20.>
4. 관계 기관, 단체의 유권해석 또는 협조가 필요한 경우 그 유권해석 등에 걸리는 기간 <개정 2018. 3. 20.>
5. 보상 청구 심사를 위하여 현지출장 조사가 필요한 경우 그 조사에 걸리는 기간 <개정 2018. 3. 20.>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자연재난, 사회재난 등) 또는 사변(事變)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정상적인 보상심의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신설 2020. 6. 18.>

**제36조(뇌성마비에 대한 보상)** ① 출생체중이 2,000g 이상, 재태주수가 34주 이상인 신생아가 분만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하여 뇌성마비가 발생한 경우 보상심의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5. 9. 3.>

1. 뇌기형, 염색체 이상, 유전자 이상, 선천성대사이상 또는 선천이상 등 선천성 요인에 의한 경우
2. 분만 후의 감염증 등 신생아기(新生兒期)의 요인에 의한 경우
3. 임신 중 임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
4. 천재지변, 전쟁, 폭동 등의 비상사태 등에 의한 경우

② 보상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환아의 뇌성마비 정도를 중증과 경증으로 구분하고 보상금을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신생아가 다태아(多胎兒)인 경우에 보상은 각각 적용한다. <신설 2013.6.26>

④ 보상금은 영 제23조에 따라 3천만원의 범위에서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제37조(신생아 사망에 대한 보상)** ① 출생체중이 2,000g 이상, 재태주수가 34주 이상인 신생아가 분만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보상심의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5. 9. 3.>

1. 뇌기형, 염색체 이상, 유전자 이상, 선천성대사이상 또는 선천이상 등 선천성 요인에 의한 경우
2. 분만 후의 감염증 등 신생아기(新生兒期)의 요인에 의한 경우
3. 임신 중 임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
4. 천재지변, 전쟁, 폭동 등의 비상사태 등에 의한 경우

② 신생아 사망은 출생 후 28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로 한다. 다만, 28일이 경과하여 사망한 경우에도 그 사망 원인이 분만 행위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었다고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신생아가 다태아(多胎兒)인 경우에 보상은 각각 적용한다. <신설 2013.6.26>

④ 신생아가 산모와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 보상은 각각 적용한다. <신설 2013.6.26>

⑤ 보상금은 영 제23조에 따라 3천만원의 범위에서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제37조의2(태아 사망에 대한 보상)** ① 사산체중이 2,000g 이상, 재태주수가 34주 이상인 태아가 분만 과정에서 사망한 경우 보상심의위

원회는 심의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뇌기형, 염색체 이상, 유전자 이상, 선천성대사이상 또는 선천이상 등 선천성 요인에 의한 경우
  2. 임신 중 임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
  3. 천재지변, 전쟁, 폭동 등의 비상사태 등에 의한 경우
- ② 태아가 다태아(多胎兒)인 경우에 보상은 각각 적용한다.
- ③ 태아가 산모와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 보상은 각각 적용한다.
- ④ 보상금은 영 제23조에 따라 3천만원의 범위에서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본조 신설 2015. 9. 3.]

**제38조(산모 사망에 대한 보상)** ① 재태주수가 20주 이상 경과한 산모가 분만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보상심의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5. 9. 3.>

1. 유산에 의한 경우
  2. 산모의 선천성 요인에 의한 경우
  3. 분만 후의 감염증 등 후천성 요인에 의한 경우
  4. 천재지변, 전쟁, 폭동 등의 비상사태 등에 의한 경우
- ② 산모가 신생아와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 보상은 각각 적용한다.

<신설 2013.6.26>

③ 보상금은 영 제23조에 따라 3천만원의 범위에서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제39조(재감정 또는 추가감정의 요구)** ① 영 제24조제4항에 따라 보상심의위원회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재감정 또는 추가감정이 필요할 경우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의료사고감정단(이하 “감정단”이라 한다)에 재감정 또는 추가감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정단은 재감정 또는 추가감정을 요청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감정서 또는 추가감정서를 보상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재감정 또는 추가감정을 할 경우 감정단장은 「의료사고감정단 운영규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제40조(심의 결과의 통보)** ① 영 제24조제5항, 제6항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원장은 청구인에게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청구 심의 결과통보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6.26.>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의 보상심의위원회 결정이 있는 경우 심의위원장은 조정위원장에게 지체 없이 심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고, 해당 사건의 기

록 일체를 조정위원장에게 보내야 한다. <신설 2013.6.26.> <개정 2018. 3. 20.>

**제41조** [본조삭제 2013. 6. 26.]

**제42조** [본조삭제 2023. 12. 14.]

## 제6장 보상금의 지급 및 환수

**제43조(보상금의 지급 등)** ① 원장은 제40조에 따라 심의 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상금 계정에서 보상 청구서에 기재된 청구인의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계좌로 직접 해당 금액을 이체하여야 하며, 그 지급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상재원이 부족하여 충당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 <개정 2023. 12. 14.>

③ 제2항에 따른 지급 지연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4조(부당이득금의 환수)** ① 원장은 제43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은 청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1. 거짓이나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경우 <개정 2018. 3. 20.>

2. 그 밖에 착오 등으로 잘못 지급된 보상금이 있는 경우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부당이득금의 환수 사유가 발생하면 부당이득사실, 부당이득금액, 납부방법 및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때 납부기한은 통보일부터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청구인이 부당이득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부당이득금에 대하여는 법정이율 등을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0.>

**제45조(환수금의 처리)** 원장은 제44조에 따라 부당이득금을 환수한 때에는 해당 금원을 보상금 계정에 편입하여야 한다.

## 제7장 보칙

**제46조(비밀의 준수)** 의료중재원의 임·직원 및 심의위원은 보상과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47조** [본조삭제 2023. 12. 14.]

**제48조(수당 등의 지급)** ① 보상심의위원회 등에 참석한 심의위원, 관계 전문가, 관계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때 필요한 경우 수당 이외에 「여비지급세칙」에 따른 여비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0.>

②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 공무원, 조정중재원 임직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4. 2. 27.]

**제49조(시행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2. 27.>

**부 칙 <2013. 3. 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에 의한 보상 청구는 2013년 4월 8일 이후 최초로 종료된 의료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사고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3. 6.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에 의한 보건의료기관개설자별 분담금 산정기준은 2013년 4월 8일 이후의 분만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3. 11. 12.>**

이 규정은 2013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2.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5. 9. 3.>**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12. 13.>**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3. 20.>**

이 규정은 원장이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2. 20.>**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6.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급적용)** 이 규정은 2019.6.12.부터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까지 생긴 사항에도 이를 적용한다.

**부 칙 <2019. 11. 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급적용)**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9.9.1.부터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까지 생긴 사항에도 이를 적용한다.

**부 칙 <2020. 6. 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급적용)** 제35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2020.2.24.부터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까지 생긴 사항에도 이를 적용한다.

**부 칙 <2021. 2. 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급적용)** 제1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1.1.1.부터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까지 생긴 사항에도 이를 적용한다.

부 칙 <2023. 12. 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담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법, 영 및 규정에 따라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등에게 부과된 보상사업 비용 분담금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0조의3은 2014. 10. 17. 부터 2023. 12. 13. 까지 분만 실적이 있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게 부과된 분담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 칙 <2025. 5. 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및 심의위원의 지명·위촉권자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및 심의위원은 제16조제2항제2호 및 제17조의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접수번호			
<b>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청구 심의 결과통보서</b>			
<p>「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귀하의 보상 청구에 대한 심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며, 보상금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 결정을 통지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됨을 알려드립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b>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 (인)</b></p>			
<b>1. 청구인</b>			
성명		생년월일	
주소	( - )		
의료사고 유형	[ ] 뇌성마비 / [ ] 신생아 사망 / [ ] 태아 사망 / [ ] 산모 사망		
<b>2. 심의 결과내역</b>			
보상금 지급여부	[ ] 인용	[ ] 기각	[ ] 기타
보상금 지급결정일		보상금 결정액	
심의 결과			

※ 접수번호			
<b>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결과통보서</b>			
<b>1. 청구인</b>			
성명		생년월일	
주소	( - )		
의료사고 유형	[ ] 뇌성마비 / [ ] 신생아 사망 / [ ] 태아 사망 / [ ] 산모 사망		
<b>2. 보상금 지급 내역</b>			
보상금	금 원(₩ )		
지급 금융기관명	지급 계좌번호		예금주
<p>「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6항에 따라 귀하가 청구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에 대하여 20 년 월 일에 위와 같이 지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b>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 (인)</b></p>			
<p>※ 보상금을 지급받은 후 보상 청구에 대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사위 기타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착오 등으로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과오 지급된 금액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p>			